

주요 연락처 및 홈페이지



알면 도움 되는
복지정보 안내서



보건·복지·건강에 대한 정보

- 보건복지상담센터 | 129 | www.129.go.kr
- 국민건강보험공단 | 1577-1000 | www.sis.nhis.or.kr
- 응급의료포털 | www.e-gen.or.kr
- 복지로 | www.blkjiro.go.kr

고용 관련 정보
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| www.workplus.go.kr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 | saeil.mogef.go.kr
-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| work.go.kr

암 관련 정보

- 국가암정보센터 | 1577-8899 | www.cancer.go.kr

병원 사회사업 관련 정보

-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| 0505-987-0909 | www.kamsw.or.kr

민간 후원 기관 정보

- 한국혈액암협회
02-3432-0807 | www.bloodcancer.or.kr
- 한국유방건강재단
02-6040-653 | www.kbcf.or.kr
-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
02-3141-5367 | www.soaam.or.kr
-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
02-766-7671 | www.kclf.org
- 한국소아암재단
02-3675-1145 | www.angelc.or.kr
-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
02-2077-3961 | www.kids119.or.kr
- 아산재단SOS의료비 지원사업
02-3010-8285 | www.asanfoundation.or.kr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
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
* 병원 사회사업(사회복지)팀에 문의하세요.

국립암센터
NATIONAL CANCER CENTER

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
National Cancer Survivorship Center

* 본 리플렛은 국립암센터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

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
National Cancer Survivorship Center

대구·경북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문의 | 053.200.3561

암 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 국가지원제도 한눈에 보기

1 암 진단을 받으셨나요?

암 진단받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'보편적 지원 제도'가 있습니다.

-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
문의 | 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- 본인부담상한제
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
2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나요?

보건소, 시군구청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 또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사회사업(사회복지)팀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|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긴급지원제도(의료지원)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차상위 본인부담감감대상자 지원사업 문의 |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
3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가요?

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한시적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긴급복지지원 제도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6 기타 지원 제도

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
-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문의 |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☎ 126
-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금연지원센터 문의 | 금연 상담전화 ☎ 1544-9030
- 가족돌봄휴직/휴가 지원 제도 문의 |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 1350

5 암을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적 장애가 남았나요?

장애 등록,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장애인 연금·장애수당 문의 |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문의 |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☎ 1355

4 치료 과정에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가요?

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.

-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등
문의 |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문의 |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
암 치료가 끝난 후, 어려움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?

환자와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 등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.

-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문의 | 국가암정보센터 ☎ 1577-8899
www.cancer.go.kr/survivor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 | www.workplus.go.kr

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았나요?

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라고 판단한 경우,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
- 연명의료결정제도 / 사전연명의료의향서
문의 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☎ 1855-0075 www.lst.go.kr

혹시 치료가 어렵다고 들으셨나요?

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통증 등 증상완화와 심리사회적, 영적 돌봄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호스피스·완화의료
문의 | 국가암정보센터 ☎ 1577-8899
문의 | 중앙호스피스센터 www.hospice.go.kr

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

| 호스피스·완화의료 |

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호스피스·완화요료를 이용하시면, 통증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,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▶ 호스피스·완화의료란

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·완화의료 전문가 팀이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, 심리/사회/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.

▶ 이용 대상자

말기 암,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,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, 만성간경화 환자로 확대되었습니다.

▶ 호스피스·완화의료 서비스

1.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
2. 환자 및 가족의 심리·사회·영적 문제 상담 및 자원 연계
3. 환자와 가족 교육(환자 돌봄 방법, 증상 조절 등)
4. 음악·미술 등 요법 및 돌봄행사 프로그램 운영
5. 호스피스·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
6.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

▶ 문의: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☎ 1811-8080
http://hospice.go.kr



암,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.

알면 도움 되는 국가지원제도 안내서

- 06 **보편적 지원제도**
-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
 - 본인부담상한제

- 07 **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**
-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 - 긴급지원제도: 의료지원
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
 -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
- 11 **생계 지원제도**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 - 긴급복지 지원제도

- 12 **돌봄 지원제도**
-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
 -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
 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- 13 **장애인 지원제도**
- 장애인 연금·장애수당
 -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

- 14 **기타 지원제도**
-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
 -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
 - 금연지원센터
 - 가족돌봄휴직/휴가
 -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
 -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
 - 한국소아암재단

- 16 **사회복귀 지원제도**
-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
 - 고용복지플러스센터

- 16 **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**
- 연명의료결정제도/ 사전연명의료의향서
 - 호스피스·완화의료

보편적 지원제도

암으로 진단받은 분은
누구나 대상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.

|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|

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%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 (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비급여 항목 제외. 식대는 50% 본인부담)

<영수증 예시>

항목	급여		③ 비급여	
	일부본인부담	② 전액 본인부담	선택 진료료	선택 진료료 이외
① 본인부담	공단부담			
5% 부담				

*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진료비 = ① + ② + ③

▶ 문의: 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
| 본인부담상한제 |

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(2020년 기준, 582만원)을 넘는 경우,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(비급여, 선별급여 등 항목 제외)

※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본인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
▶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
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

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
국가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.

| 성인 암환자 - 건강보험가입자 |

암검진사업 절차(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)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(2020년 기준, 직장가입자 100,000원 및 지역가입자 97,000원 이하)에 해당하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- ▶ 지원암종: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
- ▶ 지원금액: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
- ▶ 지원기간: 지원시작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 지원
- ▶ 문의: 주소지 관할 보건소

| 성인 암환자 - 의료급여수급권자 |

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 암을 진단받은 분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- ▶ 지원금액: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
- ▶ 지원기간: 지원시작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 지원
- ▶ 문의: 주소지 관할 보건소



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

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| 성인 암환자 - 폐암환자 |

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고지액(2020년, 직장가입자 100,000원 및 지역가입자 97,000원 이하)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▶ 지원내용

의료급여수급권자	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
건강보험가입자	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

▶ **지원기간:**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지원

▶ **문의:** 주소지 관할 보건소

| 소아 암환자 |

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▶ **지원금액:** 백혈병은 최대 연 3,000만원, 백혈병 외 모든 암종은 최대 연 2,000만원(조혈모세포이식 시 최대 연 3,000만원)을 지원하며, 환아가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지원 기간 동안 매년 등록해야 하며, 해당 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

▶ **문의:** 주소지 관할 보건소

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

긴급지원제도: 의료지원

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국가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.

| 긴급 지원사업(의료지원) |

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▶ **지원금액:** 1회(최대 2회*)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

*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

▶ **문의:**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
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

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|

저소득 가구* 중 희귀난치성 질환, 중증질환자,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

* 저소득 가구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고,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

▶ **문의:**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

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
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
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소득 구분	지원 기준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	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
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	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15% 초과 발생한 경우
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	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20% 초과 발생한 경우 (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)

- ▶ **지원금액:** 연간 2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%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▶ **지원일수:**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▶ **신청:**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▶ **문의:**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
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



생계 지원제도

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
|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|

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(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)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.

- ▶ **지원내용:** 각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(생계/의료/주거/교육)를 지속적으로 지원
- ▶ **신청:**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▶ **문의:** 생계·의료·교육급여: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 129)
주거급여콜센터 (☎ 1600-0777)
마이홈 콜센터 (☎ 1600-1004)

| 긴급복지 지원제도 |

긴급복지지원은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·재산·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▶ 지원내용

생계지원	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
의료지원	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(300만원 이내)
주거지원	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
교육지원	수업료, 학교 운영비 등
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	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
그 밖의 지원	동절기 연료비(98천원), 해산비(70만원), 장제비(80만원), 전기 요금(50만원 이내)

- ▶ **문의:**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

돌봄 지원제도

가족을 대신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.

|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|

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- ▶ **지원내용:** 신체수발 지원, 건강 지원, 가사 지원, 일상생활 지원 (월 24시간 또는 27시간)
- ▶ **문의:**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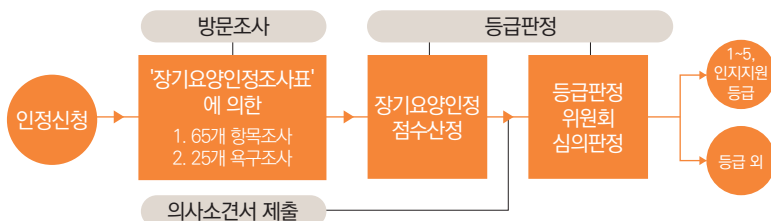
|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|

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상담, 통증관리, 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
- ▶ **문의:** 거주지 관할 보건소

|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|

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(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)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

- ▶ **문의:**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

장애인 지원제도

모든 암환자가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,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.

| 장애인 등록 절차 |



- ▶ **문의:**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| 장애인 연금·장애수당 |

- ▶ **장애인연금:**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▶ **장애수당:**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(중전 3~6급)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▶ **문의:**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|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|

만 6세~만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신체·가사·사회활동 보조, 방문 목욕,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

- ▶ **문의:**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국민연금공단(☎ 1355)

기타 지원제도

|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|

암환자 중 연말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※ 연말정산(근로자) & 종합소득세신고(사업자) 신청가능

- ▶ **신청:** 연말 원무과에 비치된 「중증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」작성하여 의료진 확인 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 주세요.
- ▶ **문의:** 국세청 세미레콜센터(☎ 126)

|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 |

만 65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, 리콜·리마인더 서비스,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
- ▶ **문의:** 주소지 관할 보건소
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(☎ 043-719-7441)

| 금연지원센터 |

스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(상담 및 보조제 지원 등)를 지원합니다.

- ▶ **지원내용:** 금연상담, 단기 금연캠프, 보건소 금연클리닉
- ▶ **문의:** 금연 상담전화(☎ 1544-9030)

| 가족돌봄휴직 & 휴가 |

가족(부모, 자녀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손자녀)이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(무급) 제도입니다.

- ※ 연 90일 사용 가능하며,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※ 가족돌봄휴가 기간(최대 10일)과 가족돌봄휴직 기간(최대 90일)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▶ **문의:**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 1350)

기타 지원제도

국가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, 외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.

|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|

만 19세 미만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아에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치료비, 이식비,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
- ▶ **문의:**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(☎ 02-745-7674)

|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|

만 18세 이전 소아암을 진단받고, 현재 치료 중인 만 29세 이하의 환아에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치료비, 재활치료비, 사회복지적 치료비(발달치료비, 치료보조비) 등을 지원합니다.

- ▶ **문의:**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(☎ 070-4659-1100)

| 한국소아암재단 |

만 19세 이하 소아암, 백혈병을 진단받은 환아에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치료비, 수술비,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.

- ▶ **문의:** 한국소아암재단(☎ 02-3675-1145)

사회복귀 지원제도

|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|

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신체·정신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상담,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- ▶ **지원내용:** 상담, 체험형 자기관리 프로그램, 심리지지 프로그램, 직업복귀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등
- ▶ **문의:** 국가암정보센터(☎ 1577-8899)
홈페이지(www.cancer.go.kr/survivor)

| 고용복지플러스센터 |

고용, 복지,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-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 모델입니다.

- ▶ **지원내용:** 구인구직, 복지상담, 신용회복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
- ▶ **문의:**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plus.go.kr>)

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

| 연명의료결정제도 / 사전연명의료의향서 |

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,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- ▶ **연명의료계획서:**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
- ▶ **사전연명의료의향서:**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
- ▶ **문의:**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(☎ 1855-0075)